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어올림플라자(가칭)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1425)

2023.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425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가. 어울림플라자는 강서구 등촌동에 조성중인 복지문화복합시설로, 2024년 하반기 조성완료 후 2025년 초에 개관할 예정임  
나.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울림플라자 내 복지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어울림플라자(가칭) (복지지원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
  - 위탁기간 : 2024. 4. ~ 2027. 3.(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요성

-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필요함
- 교육·문화·체육·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운영이 적합

다. 주요위탁 내용

- 어울림플라자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어울림플라자 운영 개시 준비
-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타 어울림플라자 복지지원·주민편의 공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개관일자 : 2025년 1월 예정
- 시설규모 : 대지면적 6,683㎡, 연면적 23,915㎡(지하4층, 지상5층)
- 공간 배치 규모(안)

구분	주요시설	면적
5층	의료시설 : 장애인치과병원	1,132.5㎡
4층	복지지원시설 : 연수시설(객실), 업무시설	2,195.6㎡
3층	복지지원시설 : 연수시설(대회의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2,044.9㎡
2층	복지지원시설 : 사무실·회의실 임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1,581.7㎡
1층	복지지원시설 : 공연장 임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1,622.1㎡
지하1층	복지지원시설 : 공연장, 도서관 임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2,275.6㎡
지하2층	복지지원시설 : 도서관, 다목적홀 주민편의시설 : 수영장, 체육센터, 문화센터 임대시설 : 상가	4,823.1㎡
지하3~4층	주차장(170면), 기계·전기실	8,239.6㎡

○ 주요시설

- 복지지원시설 : 장애인 연수시설(프로그램실, 객실 등), 공연장, 도서관, 다목적홀

- 주민편의시설 : 수영장, 체육센터, 문화센터

※ 그 외, 장애인치과병원은 시민건강국, 임대시설(상가, 업무시설) 및 주차장·기계실은 SH공사에서 관리운영

○ 이용대상 : 서울시민(장애인, 지역주민 등)

마. '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4년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1,377백만원) 확보 협의 중

○ 24년 예산액(안): 1,377,035천원

- 인건비 : 410,253천원/운영비 : 133,782천원/ 자산취득비 : 833,0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어울림플라자(가칭)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어울림플라자(가칭)는 강서구 공항대로 489에 2025년 초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복지문화복합시설임
-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공개 경쟁을 통해 모집하여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 동안 사무형 민간 위탁을 하려는 것임

###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동의안의 추진배경

- 어울림플라자(강서구 소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로 2024년 완공예정으로 복지지원시설(장애인 연수시설, 도서관, 다목적홀, 공연장)과 주민편의시설(수영장, 문화·체육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에게 위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진흥원청사 건물은 서울시에 매각되었고, 이 건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서울

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장애인 문화활동 특화시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활용에 대해 「구) 한국정보화진흥원부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어울림플라자 사업추진 계획」 서울시장 방침 결정('16.4.5)

※ '13.10 :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서울시 매입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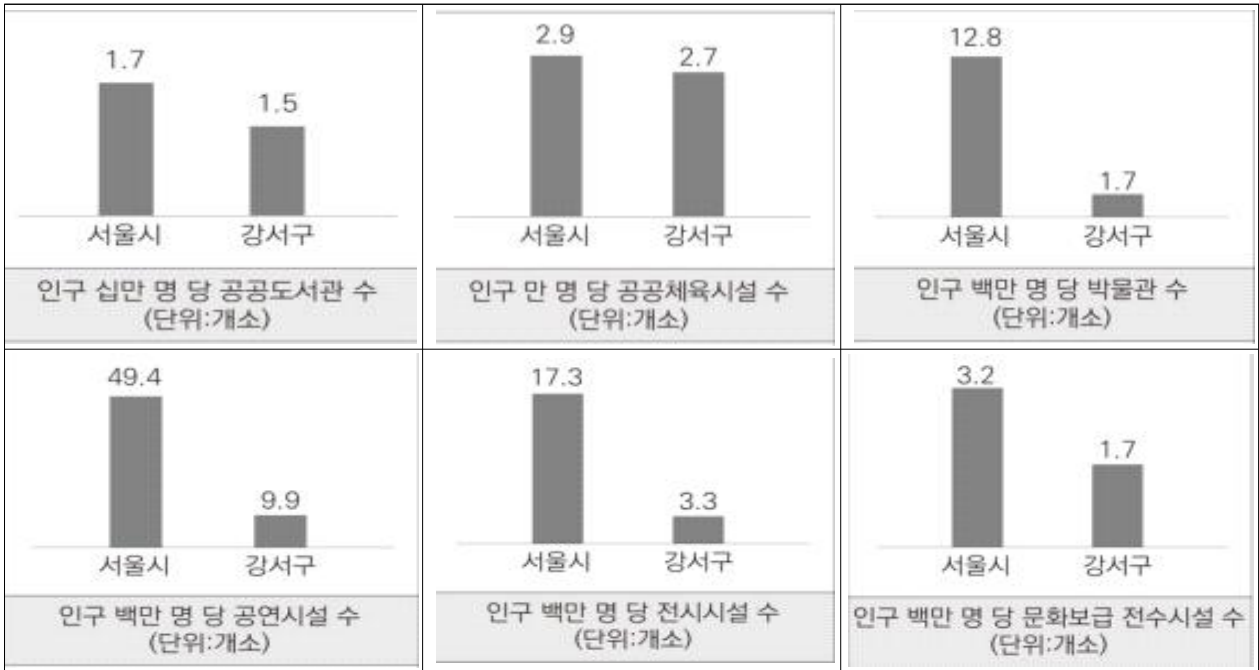
###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규 모 : 지상5층, 지하4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23,915㎡)
- 주요시설 : 장애인 연수·교육 시설, 일반 임대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 사업기간 : 2015.6월 ~ 2024.8월
  - \* '22.8.3. 착공, '24년 하반기 준공 후 '25년초 개관 예정
- 사업방식 : SH공사 위탁개발
- 총사업비 : 85,998백만원(시비 64,548 / SH공사 21,450) ※ 토지비 41,839백만원 별도



-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로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 인프라 보급 비교



※ 출처 : 2019년 서울통계연보(2018년 기준)

- 어울림플라자 사업방식은 공공위탁개발·운영방식이며, 수탁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어울림플라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예정임.

〈표1〉 운영기관별 관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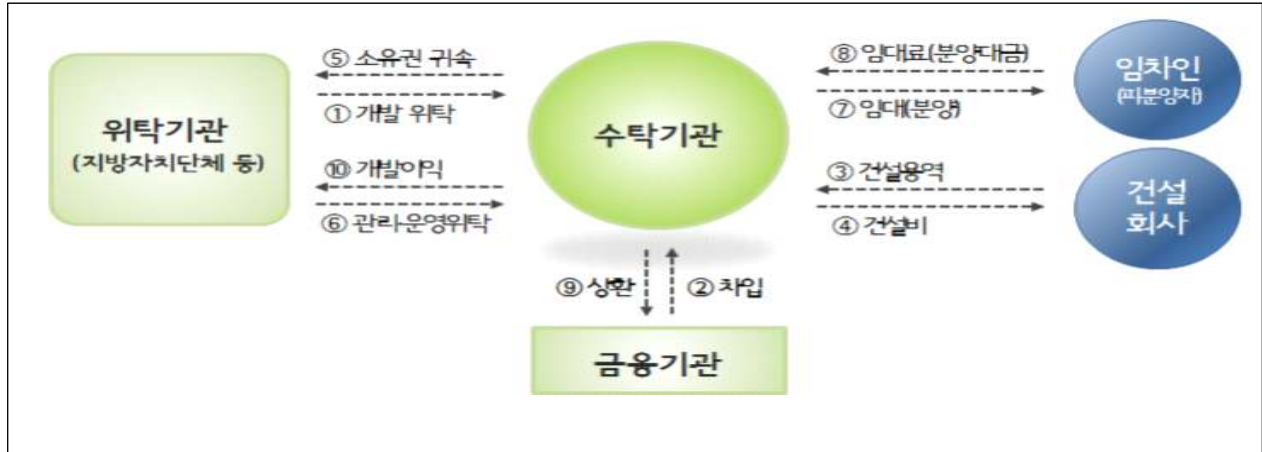
구분	임대·운영관리	시설관리	자금관리
임대시설	SH공사	SH공사	SH공사
복지지원시설 (장애인 연수시설, 문화시설)	민간위탁 (사무형 위탁)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SH공사		

- ‘위탁개발’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가 위탁받은 재산을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sup>1)</sup>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1) “개발”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의미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돌려주는 사업방식으로서, 수탁기관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08년 12월 최초 도입된 제도임.

〈표2〉 위탁개발사업의 구조



## 나.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본 위탁사무는 사무형으로 분류되며, 어울림플라자 내 복지지원시설 (장애인 연수시설, 도서관, 다목적홀, 공연장), 주민편의시설(수영장, 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무형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어울림플라자 복지지원·주민편의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 ※ 복지지원시설(장애인 연수, 도서관, 다목적홀, 공연장)
  - 주민편의시설(문화센터, 체육센터, 수영장)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3년(2024.4. ~ 2027.3. 예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수탁기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민간법인

- 장애인 관련 시설(프로그램) 또는 복지·문화·체육 등 복합공간(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장애인복지 및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민간기업 또는 법인

○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플라자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위탁사무는 「지방차지법」 제13조2)제2항 제2호 라목 및 제5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3)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게 되며, 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설치비를 지원하게 됨.

2)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3)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 1)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 집행부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어울림플라자의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어울림플라자 사무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울림플라자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 및 콘셉트 마련</li><li>▶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운영규정 마련<br/>(프로그램 이용, 장애인 숙박 이용, 공연장·다목적홀 운영 및 대관 기준 등)</li></ul></li><li>- 어울림플라자 운영 개시 준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영 조직 구성, 인력 채용 및 자산 구매</li><li>▶ 어울림플라자 홍보, 개관식, 홈페이지 구축</li></ul></li><li>-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교육·연수프로그램 기획·운영</li><li>▶ 도서관·공연장·문화센터·수영장·체육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li><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배리어프리 행사 및 문화 예술 콘텐츠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 기획·운영</li></ul></li><li>- 기타 어울림플라자 복지지원·주민편의 공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li></ul> |
|---|

- 대상 사무의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직접 시행해야 하고 민간위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어울림플라자의 사무내용을 보면 ①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②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위탁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 ③ 집행부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 2)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어울림플라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비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고려하여 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방식보다는 민간위탁방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강서지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복지시설인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지역주민, 공공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다양한 복지, 문화, 체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해당 사무 운영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 등을 고려함에 있어 집행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설계와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복합문화공간 운영 시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통한 선정을 진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련된 개별 조례 규정이 별도로 없어 추후 이에 대한 조례 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서울특별시 최근 3년 자치구별 장애인 수

자치구명	2,020	2,021	2,022	비고
소계	394,190	392,123	391,859	
종로구	6,015	5,929	5,834	
중구	5,700	5,634	5,552	
용산구	7,960	7,686	7,621	
성동구	11,412	11,284	11,092	
광진구	12,353	12,253	12,183	
동대문구	15,701	15,518	15,481	
중랑구	20,394	20,357	20,279	
성북구	17,490	17,382	17,471	
강북구	17,441	17,395	17,186	
도봉구	15,436	15,300	15,345	
노원구	27,312	26,904	26,696	
은평구	21,773	21,756	21,732	
서대문구	12,551	12,311	12,348	
마포구	12,951	12,945	12,904	
양천구	17,558	17,525	17,621	
<b>강서구</b>	<b>28,727</b>	<b>28,546</b>	<b>28,508</b>	
구로구	18,280	18,374	18,520	
금천구	11,390	11,458	11,615	
영등포구	14,539	14,495	14,654	
동작구	14,607	14,417	14,317	
관악구	20,265	20,211	20,228	
서초구	10,542	10,291	10,158	
강남구	15,200	15,182	15,158	
송파구	20,286	20,356	20,571	
강동구	18,307	18,614	18,785	